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급계획서 작성방법 안내

(기존종사자 보수비교표, 신규입사자 보수표)

2014. 7.



1 **처우개선비 전산입력 기본원칙**

2 **기존종사자 보수비교표 전산입력 방법**

3 **처우개선 지급계획서 제출 및 조회**

4 **신규입사자 보수표 전산입력 방법**

5 **기존종사자/신규입사자 입력내용 조회**

1. 처우개선비 전산입력 기본원칙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급 계획서 제출

- 기존 종사자 = 제출기한 이후에는 제출할 수 없음(2014년 7월 말까지 제출)
- 신규 입사자 = 발생시마다 (해당 급여제공 월 청구 전까지 **보수표만 입력**)

■ 기준 연·월

- 월급 및 시급, 처우개선비(월)
 - 전년도 : 2013년 12월 지급받은 보수와 처우개선비
 - 당년도 : 2014년 7월 지급받은(지급받을) 보수와 처우개선비
- 근무개월수(연간근무시간) 및 연간 보수액
 - 전년도 :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제** 근무한 개월(시간)과 금액
 - 당년도 :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예상** 근무할 개월(시간)과 금액

1. 처우개선비 전산입력 기본원칙

■ 기존종사자와 신규입사자 판단 기준

- 기존종사자 : '13년 12월과 ' 14년 7월 **두 달 모두** 보수를 받아 **비교가 가능한 자**
(계속해서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두 달 모두 보수를 받으면 해당)
- 신규입사자 : ' 13년 12월과 ' 14년 7월의 보수를 **비교할 수 없는 자**
 - 2013년 12월에 보수를 받지 않은 요양보호사
 - 2014년 1월 이후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요양보호사
 - 2013년 12월에는 근무 후 개인 사정 등으로 서비스를 중단한 뒤
2014년 7월에는 급여제공 하지 않고, 이후 급여를 제공하기 시작한 요양보호사
 - 기존에 방문요양 서비스만 제공하여 기존종사자에 방문요양 보수비교표만 제출하였고, 2014년 1월 이후부터 방문목욕을 제공하기 시작한 요양보호사
 - 2014년 서비스 직종 변경자(예: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2. 기존종사자 보수비교표 전산입력 방법

2014년 7월 이후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작성 기준

○ 기존종사자
2013년 12월과 2014년 7월 **두 달 모두** 보수를 받아 **보수를 비교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 신규입사자
2014년 1월 이후 신규입사자 및 **기존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요양보호사
2013년 12월과 2014년 7월의 **보수를 비교할 수 없는** 요양보호사

- 예 1) 2014년 1월 이후 입사한 요양보호사
2) 2013년 12월엔 서비스 제공, 2014년 7월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요양보호사
또는 2013년 12월 서비스 미제공, 2014년 7월 서비스를 제공한 요양보호사
3) 방문요양은 2013년 12월과 2014년 7월 두 달 모두 근무하였지만, 방문목욕은 그러하지 않은 경우
: 방문요양(기존종사자), 방문목욕(신규입사자)
4) 2014년 7월 이후 서비스 직종 변경자(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5) 해당기관 퇴직 또는 근무형태 변경으로 2014년 7월 이후 재입사자 등

※ 2014년 7월 이전 청구를 위한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작성은 홈페이지-알림방-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3년3월 이후 급여비용 청구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전산입력방법(2013.3.25.)
- 2014년 7월 이전 급여비용 청구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작성방법 게시(2014.1.16.)



기존종사자
대상입력/제출/
지급계획서 출력



기존종사자
대장조회



지급계획서



신규입사자
대상 입력



신규입사자
대장조회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회원서비스
『20. 처우개선비』 선택 후
기존종사자 대상입력/제출/지급계획서 출력
을 선택합니다.

2. 기존종사자 보수비교표 전산입력 방법

처우개선비 기존종사자

기존종사자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지급계획서 출력

기존종사자 기준

기준연월 2014년 07월

종사자 (이름)

> 조회

연번	급여유형	직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근무 시작일자	근무 종료일자	시급 입력여부	월급 입력여부	제출일자	입력내용 상세보기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급	이	4	20120822	99991231	X	X	-	상세보기
2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급	이	7	20111201	99991231	X	X	-	상세보기
3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급	이	7	20111201	99991231	X	X	-	상세보기
4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급	이	9	20110101	99991231	X	X	-	상세보기

- 기준연월 : 2014년 7월 / 2014년 1월 / 2013년 3월 중 해당되는 기준월 선택
※ 세부사항 개정 관련 재 제출은 기준연월 2014년 7월입니다.

- 기준연월 선택 후 조회하면 인력신고 되어있는 요양보호사가 조회됩니다.

2. 기존종사자 보수비교표 전산입력 방법

연번	급여유형	직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근무 시작일자	근무 종료일자	시급 입력여부	월급 입력여부	제출일자	입력내용 상세보기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급	노	4	20120822	99991231	X	X	-	상세보기
2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급	이	7	20111201	99991231	X	X	-	상세보기
3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급	박	7	20111201	99991231	X	X	-	상세보기
4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급	최	9	20110101	99991231	X	X	-	상세보기

- 근무시작일자 : 시·군·구에 인력 신고한 근무시작일
- 근무종료일자 : 시·군·구에 인력 신고한 근무종료일
 - 근무종료가 되지 않은 경우 "99991231"로 보여집니다.
 - 입·퇴사를 여러 번 반복한 경우 근무시작일을 달리하여 여러 개 조회됨
- 시급·월급 입력여부 : 입력하지 않았으면 X, 입력되었으면 O
 - 시급과 월급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시급이 X 면 월급이 O 입니다.
- 제출일자 : 지급계획서를 제출한 최종 일자가 보여집니다.
 - 제출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는 - 표시로 보여집니다.
- 입력내용 상세보기 : 입력을 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택합니다.
 - 보수비교표 입력을 하려면 이름을 클릭합니다.

2. 기존종사자 보수비교표 전산입력 방법

■ 처우개선편 기존종사자

제출 지급계획서 출력 기존종사자 기준

기준연월 2014년 07월 종사자 (이름) > 조회

연번	급여유형	직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근무 시작일자	근무 종료일자	시급 입력여부	월급 입력여부	제출일자	입력내용 상세보기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급	사	4	20120822	99991231	×	×	-	상세보기
2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급	우	7	20111201	99991231	×	×	-	상세보기
3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급	트	7	20111201	99991231	×	×	-	상세보기
4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급	이정진	511117	99991231	99991231	×	×	-	상세보기

급여유형	직종	성명	보수형태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급		보수형태 ▼ 보수형태 1.시급 2.월급

- 요양보호사의 이름을 클릭하면 배경색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하단의 급여유형/직종/성명/보수형태가 보여지고 보수형태를 선택합니다.

※ 입력내용 상세보기를 선택하면 입력한 내용이 보여지며, 입력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이름을 클릭하여야 합니다.

전년도) 2013년 12월 기준

서비스종류	해당기관검직내용		월보수			
	여부	직종	기본급	법정수당	기타	계
방문요양	검직여부 ▼	검직직종 ▼	0			

 버튼을 선택하면
 간단한 안내메세지가 보여집니다.
 법정수당 및 기타로 세분화할 수 없는 경우 기본급에
 등록합니다.

**버튼을 선택하면
간단한 안내메세지가 보여집니다.**

법정수당 및 기타로 세분화할 수 없는 경우 기본급에
등록합니다.

당년도) 2014년도 7월 기준

월급 및 처우개선비는 7월, 근무개월수 및 연간보수액 2014년 7월~12월말 예상 근무개월 및 보수입력

- 보수형태(시급or월급)를 선택하면 보수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펼쳐집니다.
- 해당기관 검직내용
 - 요양보호사 외 다른 직종으로 인력신고·근무할 경우 : 1. 검직(Y)
 - 요양보호사 인력신고만 되어있고 근무할 경우 : 2. 검직(N), 해당직종 선택

2. 기존종사자 보수비교표 전산입력 방법 (월급)

전년도) 2013년 12월 기준
월급 및 처우개선비는 12월, 근무개월수 및 연간보수액은 2013년 실제 근무개월 및 보수입력

서비스종류	해당기관검적내용		월보수			
	여부	직종	기본급	법정수당	기타	계
방문요양	겸직여부 ▼	겸직직종 ▼	0	0	0	0

처우개선비(월)	근무개월수 및 연간총보수액				월평균보수액
	근무개월수	연간보수액	일시적성과금	계	
0	0	0	0	0	0

당년도) 2014년도 7월 기준
월급 및 처우개선비는 7월, 근무개월수 및 연간보수액 2014년 7월~12월말 예상 근무개월 및 보수입력

■ 월보수

- 기본급 : 월 보수를 받는 경우 기본급여 입력
- 법정수당 : 연차, 주휴,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 등
- 기타 :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월정액 (예:지사체 보조금, 복리후생비 등)

※ 월급을 기본급과 법정수당, 기타로 나누어 입력할 수 없는 경우
기본급으로 등록하셔도 됩니다.

■ 처우개선비(월)

- 전년도 : 2013년 12월에 실제 지급한 처우개선비 입력
- 당년도 : 2014년 7월에 지급(예정)한 처우개선비 입력

2. 기존종사자 보수비교표 전산입력 방법 (월급)

근무개월수 및 연간총보수액					월평균보수액
처우개선비(월)	근무개월수	연간보수액	일시적성과금	계	
0	0	0	0	0	0

■ 근무개월수 연간보수액

- 전년도 : 2013년도 실제 근무 개월과 실제 지급 보수
- 당년도 : 2014년 7월~12월 말까지 예상 근무 개월과 지급 예정 보수
- 월급의 경우 **월 중 입사한 경우에도 한 달치의 보수로 계산합니다.**

예시) 2013년 12월 25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인 경우 (월급 150만원)

- 전년도 : 근무 개월 수 : 1개월, 연간보수액 : 150만원(150만원x1개월)
- 당년도 : 근무 개월 수 : 6개월, 연간보수액 : 900만원(150만원x6개월)

※ 연간 보수액은 **처우개선비를 제외한 보수금액**으로 입력합니다.
(월평균보수액은 625원이나 10만원 등 처우개선비를 입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일시적 성과금 : 연1~2회 받는 금액 (예 : 명절 효도비, 인센티브 등)

■ 계 : 연간보수액 + 일시적 성과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월평균 보수액 : 연간보수액/근무개월수 자동 계산

※ 월급은 전 · 당년도 월평균보수액을 비교하여 증감여부를 판단합니다.

2. 기존종사자 보수비교표 전산입력 방법 (시급)

전년도) 2013년 12월 기준

시급 및 처우개선비는 12월, 연간근무시간 및 보수액은 2013년 실제 근무시간 및 보수입력

서비스종류	해당기관검적내용		시간급			
	여부	직종	시급	법정수당	기타	계
방문요양	겸직여부 ▼	겸직직종 ▼	0	0	0	0

처우개선비(월)	연간근무시간 및 연간총보수액				시간당평균보수액
	연간근무시간	연간보수액	일시적성과금	계	
0	0	0	0	0	0

당년도) 2014년도 7월 기준

시급 및 처우개선비는 7월, 연간근무시간 및 보수액은 2014년 7월~12월말 예상 근무시간 및 보수입력

■ 시간급

- 시급 : 시급으로 보수를 받는 경우 시간당 급여액 입력
- 법정수당 : 월 법정수당(연차, 주휴,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 등) / 근무시간
- 기타 :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월정액 (예 : 지자체 보조금, 복리후생비 등)

※ 시급을 법정수당과 기타로 나누어 입력할 수 없는 경우 시급으로 등록하셔도 됩니다.

■ 처우개선비(월)

- 전년도 : 2013년 12월에 실제 지급한 처우개선비 입력
- 당년도 : 2014년 7월에 지급(예정)한 처우개선비 입력

2. 기존종사자 보수비교표 전산입력 방법 (시급)

연간근무시간 및 연간총보수액				
처우개선비(월)	연간근무시간	연간보수액	일시적성과금	계
0	0	0	0	0

■ 연간근무시간 및 연간보수액

- 전년도 : 2013년도 실제 근무 시간과 실제 지급 보수
- 당년도 : 2014년 7월~12월 말까지 예상 근무 시간과 지급 예정 보수
- 시급의 경우 **월 중 입사한 경우에는 실제 시간과 보수를 입력합니다.**

예시) 2013년 12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인 경우(시급 7,000원, 월 80시간 근무)

- 전년도 : 연간근무시간 : 80시간, 연간보수액 : 560,000원(7,000원x80시간)

- 당년도 : 연간근무시간 : 480시간, 연간보수액 : 3,360,000원(7,000원x480시간)

※ 연간 보수액은 **처우개선비를 제외한 보수금액**으로 입력합니다.

(시간당평균보수액은 625원이나 10만원 등 처우개선비를 입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일시적 성과금 : 연1~2회 받는 금액 (예 : 명절효도비, 인센티브 등)

■ 계 : 연간보수액 + 일시적 성과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시간당 평균 보수액 : 연간보수액/연간근무시간 자동 계산

※ **시급은 전 · 당년도 (시급+법정수당)의 합을 비교**하여 증감여부를 판단합니다.

2. 기존종사자 보수비교표 전산입력 방법 (감소사유)

증감

감소

관련문서는 반드시 비치

감소사유

감소사유

1. 근무시간 감소(전년대비 야간, 휴일, 휴가 등 근무시간이 줄어듦)
 2. 직책 변경(당년도에 직책이 변경됨)
 3. 수급자 변동(가족 <-> 일반, 등급변동)
 4. 기타사유(1~3번과 다른 정당한 사유)
 5. 임금삭감(급여비용 청구불가)

※ 저장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단에 메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단 - 오른쪽 버튼 클릭 - 메뉴 모음 체크)

4대보험 가입

건강 연금 산재 고용

☐ ☐ ☐ ☐

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care.or.kr 추가

■ 보수가 감소되지 않아야 저장 후 제출할 수 있으나,

■ 보수가 감소된 경우에도

- ① 근무시간 감소(전년대비 야간, 휴일, 휴가 등 근무시간이 줄어듦)
- ② 직책변경(당년도에 직책이 변경됨, 예: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 ③ 수급자 변동(가족↔일반, 등급변동)의 경우엔 예외로 함.

■ 그 외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기타사유 선택 후 감소 기타사유에 상세내용을 작성할 수 있음

※ 신규입사자는 보수 비교를 하지 않으므로 감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처우개선 지급계획서 제출 및 조회

제출
지급계획서 출력
기존종사자 기준

기준연월 2014년 07월 종사자(이름) > 조회

연번	급여유형	직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근무 시작일 자	근무 종료일 자	시급 입력여 부	월급 입력여 부	제출일자	입력내용 상세보기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 급	이		20120626	99991231	○	×		상세 보기

■ 기존종사자 : 7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 요양보호사 별 보수비교표를 모두 입력한 후 한 번에 제출
- 지급계획서는 제출이 완료되면 수정할 수 없음
 - 제출 기한 내 : 제출하였어도 삭제 후 다시 입력·제출 가능
 - 제출 기한 후 : 수정불가, 삭제·입력·제출할 수 없음
- 제출 기한 내에 기존종사자 보수비교표를 입력 ·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출한 내역이 없으면 제출기한 후에도 1회에 한하여 제출 가능
 - 단, 제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 신규입사자 : 저장으로 완료되며,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 지급계획서는 예상금액이므로 연중 변경되더라도 수정할 수 없습니다.

3. 처우개선 지급계획서 제출 및 조회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제출

전년도 요양보호사 임금현황

대상자	시급합산액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입소시설	월급합산액
41 명	212,696 원	111,348 원	101,348 원	0 원	0 원	0 원	15,980,000 원

기타(특이사항 등)

당년도 요양보호사 임금현황

대상자	시급합산액	평균인상률	월급합산액	평균인상률	지급예정일
41 명	214,254 원	0.7 %	15,980,000 원	0 %	매 월 일

- 기타 (특이사항) :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입력
- 지급예정일 : 처우개선비 선지급 예정일 입력 후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 시급합산액
 - 전년도 : 급여유형과 시급합산금액, 당년도 : 시급합산액과 평균증감율
- 월급합산액
 - 전년도 : 월급 합산액, 당년도 : 월급합산액과 평균증감율이 보여집니다.

3. 처우개선 지급계획서 제출 및 조회

2014년 7월 이후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작성 기준

○ 기존종사자
2013년 12월과 2014년 7월 **두 달 모두** 보수를 받아 **보수를 비교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 신규입사자
2014년 1월 이후 신규입사자 및 **기존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요양보호사
2013년 12월과 2014년 7월의 **보수를 비교할 수 없는** 요양보호사

- 예 1) 2014년 1월 이후 입사한 요양보호사
2) 2013년 12월엔 서비스 제공, 2014년 7월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요양보호사
또는 2013년 12월 서비스 미제공, 2014년 7월 서비스를 제공한 요양보호사
3) 방문요양은 2013년 12월과 2014년 7월 두 달 모두 근무하였지만, 방문목욕은 그러하지 않은 경우
: 방문요양(기존종사자), 방문목욕(신규입사자)
4) 2014년 7월 이후 서비스 직종 변경자(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5) 해당기관 퇴직 또는 근무형태 변경으로 2014년 7월 이후 재입사자 등

※ 2014년 7월 이전 청구를 위한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작성은 홈페이지-알림방-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후 급여비용 청구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전산입력방법(2013.3.25.)
- 2014년 7월 이전 급여비용 청구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작성방법 게시(2014.1.16.)



기존종사자
대상입력/제출/
지급계획서 출력



기존종사자
대장조회



지급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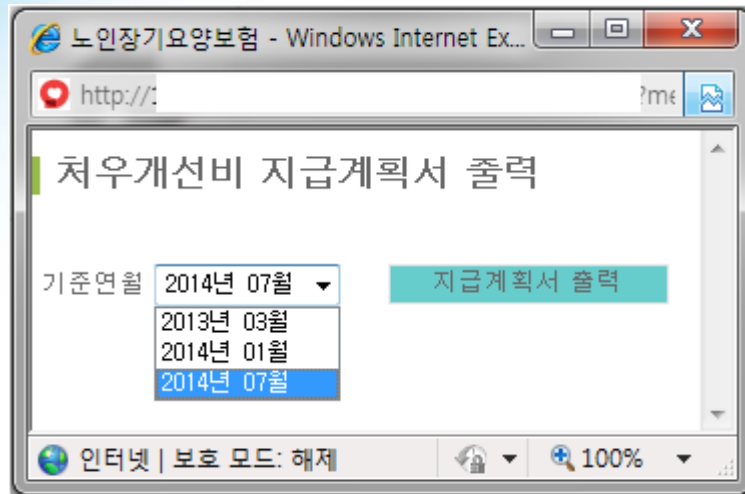
신규입사자
대상 입력



신규입사자
대장조회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회원서비스
『20. 처우개선비』 선택 후
지급계획서를 선택합니다.

3. 처우개선 지급계획서 제출 및 조회



■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출력

- 기준연월 : 2014년 7월 / 2014년 1월 / 2013년 3월로 조회 가능
- 기준연월에 맞게 선택한 후 오른쪽의 지급계획서 출력 선택하면 해당되는 처우개선 지급계획서가 보여짐

3. 처우개선 지급계획서 제출 및 조회

2014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급 계획서				
장기요양 기관	명 칭	기관기 호		
	전화번호	주 소		
전년도 요양보호사 보수현황	○ 요양보호사 평균 보수현황			
	- 대상자 : 요양보호사 3 명			
	- 시간당 평균보수액 : 6,500 원			
	· 방문요양 : 6,500 원 · 방문목록 : 0원 · 주·야간보호 : 0원			
	· 단기보호 : 0 원 · 시설급여기관 : 0원			
당년도 요양보호사 임금현황	- 월평균보수액 : 1,100,000 원			
	- 기타(특이사항 등)			
	○ 요양보호사 보수 지급계획			
	- 대상자 : 요양보호사 3 명			
	- 시간당 평균보수액 : 6,541 원, 평균 인상률: 0.6 %			
	- 월평균보수액 : 1,150,000 원, 평균 인상률: 4.5 %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계획			
	- 지급예정일 : 매월 20 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장 제1절 제4호에 따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을 위하여 지급계획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합니다.				
붙임 전 · 당년도 종사자별 보수 비교표 1부.				
2014.07.14.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	연락처: --	E-mail: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① 장기요양기관
기본사항 자동구현

② 전년도(2013년도)
요양보호사 임금현황
자동구현

③ 당년도(2014년7월이후)
요양보호사 임금현황
자동구현

■ 상단의 출력버튼을
선택하여 출력합니다.

4. 신규입사자 보수표 전산입력 방법

2014년 7월 이후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작성 기준

- 기존종사자
2013년 12월과 2014년 7월 **두 달 모두** 보수를 받아 **보수를 비교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 신규입사자
2014년 1월 이후 신규입사자 및 **기존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요양보호사
2013년 12월과 2014년 7월의 **보수를 비교할 수 없는** 요양보호사
- 예 1) 2014년 1월 이후 입사한 요양보호사
 2) 2013년 12월엔 서비스 제공, 2014년 7월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요양보호사
 또는 2013년 12월 서비스 미제공, 2014년 7월 서비스를 제공한 요양보호사
 3) 방문요양은 2013년 12월과 2014년 7월 두 달 모두 근무하였지만, 방문목욕은 그러하지 않은 경우
 : 방문요양(기존종사자), 방문목욕(신규입사자)
 4) 2014년 7월 이후 서비스 직종 변경자(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5) 해당기관 퇴직 또는 근무형태 변경으로 2014년 7월 이후 재입사자 등
- ※ 2014년 7월 이전 청구를 위한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작성은 홈페이지-알림방-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후 급여비용 청구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전산입력방법(2013.3.25.)
 - 2014년 7월 이전 급여비용 청구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작성방법 게시(2014.1.16.)



기존종사자
대상입력/제출/
지급계획서 출력



기존종사자
대장조회



지급계획서



신규입사자
대상 입력



신규입사자
대장조회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회원서비스
『20. 처우개선비』 선택 후
신규입사자 대상입력을 선택합니다.

4. 신규입사자 보수표 전산입력 방법

■ 처우개선비 신규입사자

신규입사자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입사자 기준

종사자 (이름) 급여제공연월 **2014년 7월 이후** **> 조회**

연번	급여유형	직종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 시작일자	근무 종료일자	시급 입력여부	월급 입력여부	저장일자	입력내용 상세보기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급		3201311132	3		X	X	-	상세보기
2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1급		3201311132	3		X	X	-	상세보기
3	주야간보호	요양보호사 1급		0201108019	1		X	X	-	상세보기
4	다기보호	요양보호사 1급		03000110001000010001			X	X	-	상세보기

■ 급여제공연월

- 2014년 7월 이후/ 2014년 1월~6월/ 2013년 중 해당되는 급여제공연월 선택
- ※ 세부사항 개정 관련 재 제출은 급여제공연월 2014년 7월 이후입니다.
- ※ A 요양보호사가 2014년 3월 근무를 시작하여 신규입사자로 입력했더라도 2014년 7월 이후로 다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입력한 내용은 급여제공연월 1월~6월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기준연월 선택 후 조회하면 인력신고 되어있는 요양보호사가 조회됩니다.

4. 신규입사자 보수표 전산입력 방법

연번	급여유형	직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근무 시작일자	근무 종료일자	시급 입력여부	월급 입력여부	저장일자	입력내용 상세보기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급	노	4	20120822	99991231	X	X	-	상세보기
2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급	이	7	20111201	99991231	X	X	-	상세보기
3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급	박	7	20111201	99991231	X	X	-	상세보기
4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급	김	9	20110101	99991231	X	X	-	상세보기

- 근무시작일자 : 시·군·구에 인력 신고한 근무시작일
- 근무종료일자 : 시·군·구에 인력 신고한 근무종료일
 - 근무종료가 되지 않은 경우 "99991231"로 보여집니다.
 - 입·퇴사를 여러 번 반복한 경우 근무시작일을 달리하여 여러 개 조회됨
- 시급·월급 입력여부 : 입력하지 않았으면 X, 입력되었으면 O
 - 시급과 월급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시급이 X 면 월급이 O 입니다.
- 저장일자 : 보수표를 저장한 최종 일자가 보여집니다.
 - 저장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는 - 표시로 보여집니다.
- 입력내용 상세보기 : 입력을 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택합니다.
 - 보수표 입력을 하려면 이름을 클릭합니다.

4. 신규입사자 보수표 전산입력 방법

■ 처우개선비 신규입사자

신규입사자 기준

종사자 (이름) 급여제공연월 2014년 7월 이후 > 조회

연번	급여유형	직종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시작일자	근무종료일자	시급 입력여부	월급 입력여부	저장일자	입력내용 상세보기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급강		2013111320			×	×	-	상세보기
2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1급강		2013111320			×	×	-	상세보기
3	주야간보호	요양보호사 1급강		2011080199			×	×	-	상세보기
4	다기보호	요양보호사 1급강		2011080199			×	×	-	상세보기

급여유형	직종	성명	보수형태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급	김영민	보수형태 ▼ 보수형태 1.시급 2.월급

- 요양보호사의 이름을 클릭하면 배경색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하단의 급여유형/직종/성명/보수형태가 보여지고 보수형태를 선택합니다.

※ 입력내용 상세보기를 선택하면 입력한 내용이 보여지며, 입력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이름을 클릭하여야 합니다.

4. 신규입사자 보수표 전산입력 방법 (월급)

당년도) 2014년도 7월 기준

월급 및 처우개선비는 7월 또는 근무를 시작한 달의 전체 보수 입력
근무개월수 및 연간보수액은 2014년 7월 (또는 근무를 시작한 달)부터 12월말까지 예상 근무시간 및 보수 입력
※ 월 중 입사하였더라도 월급의 경우에는 근무개월과 연간보수액을 1달 전체금액으로 입력합니다.

서비스종류	해당기관검직내용		월보수			
	여부	직종	기본급	법정수당	기타	계
방문요양	겸직여부 ▼	겸직직종 ▼	0	0	0	0

처우개선비(월)	근무개월수 및 연간총보수액				월평균보수액
	근무개월수	연간보수액	일시적성과금	계	
0	0	0	0	0	0

■ 월보수 : 7월 월보수 (7월 이후 입사 또는 급여제공 시작한 경우 그 달의 월보수)

예시: '14.1~7월 입사자는 2014.7월로, '14.9월 입사자는 2014.9월로 입력

- 기본급 : 월 보수를 받는 경우 기본급여 입력
- 법정수당 : 연차, 주휴,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 등
- 기타 :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월정액 (예:지자체 보조금, 복리후생비 등)

※ 월급여를 기본급과 법정수당, 기타로 나누어 입력할 수 없는 경우
기본급으로 등록하셔도 됩니다.

■ 처우개선비(월)

- '14.7월 급여제공을 하는 경우 7월 지급(예정) 처우개선비
- '14.7월 이후 입사 또는 급여제공을 시작한 경우 급여제공을 시작한 달에 지급(예정) 처우개선비

4. 신규입사자 보수표 전산입력 방법 (월급)

처우개선비(월) ?	근무개월수 및 연간총보수액 ?			계	월평균보수액
	근무개월수 ?	연간보수액 ?	일시적성과금 ?		
0	0	0	0	0	0

■ 근무개월수 및 연간 보수액

- 7월부터 12월 말까지 예상 근무 개월과 지급 예정 보수
- 7월 이후 입사 또는 급여제공을 시작한 자는 급여제공을 시작한 달로부터 12월 말까지로 계산합니다.
- 월급의 경우 월 중 입사한 경우에도 한 달치의 보수로 계산합니다.

예시) 2014년 8월 20일부터 급여제공을 시작한 경우 (월급 150만원)

- 근무 개월 수 : 5개월(8,9,10,11,12월), 연간보수액 : 750만원(150만원x5개월)

※ 연간 보수액은 **처우개선비를 제외한 보수금액**으로 입력합니다.
(월평균보수액은 625원이나 10만원 등 처우개선비를 입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일시적 성과금 : 연1~2회 받는 금액 (예 : 명절 효도비, 인센티브 등)

■ 계 : 연간보수액 + 일시적 성과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월평균 보수액 : 연간보수액/근무개월수 자동 계산

4. 신규입사자 보수표 전산입력 방법 (시급)

당년도) 2014년도 7월 기준

시급 및 처우개선비는 7월, 또는 근무를 시작한 달의 보수 입력

연간근무시간 및 보수액은 2014년 7월(또는 근무를 시작한 달)부터 12월말까지 예상 근무시간 및 보수 입력

서비스종류	해당기관겸직내용		시간급			
	여부	직종	시급	법정수당	기타	계
방문요양	겸직여부	겸직직종	0	0	0	0

처우개선비(월)	연간근무시간 및 연간총보수액				시간당평균보수액
	연간근무시간	연간보수액	일시적성과금	계	
0	0	0	0	0	0

■ 시간급 : 7월 시급 (7월 이후 입사 또는 급여제공 시작한 경우 그 달의 시급)

예시: '14.1~7월 입사자는 2014.7월로, '14.9월 입사자는 2014.9월로 입력

- 시급 : 시급으로 보수를 받는 경우 시간당 급여액 입력
- 법정수당 : 월 법정수당(연차, 주휴,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 등) / 근무시간
- 기타 :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월정액 (예 : 지자체 보조금, 복리후생비 등)

※ 시급을 법정수당과 기타로 나누어 입력할 수 없는 경우 시급으로 등록하셔도 됩니다.

■ 처우개선비(월)

- '14.7월 급여제공을 하는 경우 7월 지급(예정) 처우개선비
- '14.7월 이후 입사 또는 급여제공을 시작한 경우 급여제공을 시작한 달에 지급(예정) 처우개선비

4. 신규입사자 보수표 전산입력 방법 (시급)

처우개선비(월) ?	연간근무시간 및 연간총보수액 ?				시간당평균보수액
	연간근무시간 ?	연간보수액 ?	일시적성과금 ?	계	
0	0	0	0	0	0

■ 연간근무시간 및 연간 보수액

- 7월부터 12월 말까지 예상 근무시간과 지급예정 보수
- 7월 이후 입사 또는 급여제공을 시작한 자는 급여제공을 시작한 달로부터 12월 말까지로 계산합니다.
- 시급의 경우 월 중 입사한 경우에는 실제 시간과 보수를 입력합니다.

예시) 2014년 8월 20일부터 급여제공을 시작한 경우(시급 7,000원, 월 80시간 근무)

- 연간근무시간 : 340시간(8월 20시간, 9~12월 80시간)
- 연간보수액 : 2,380,000원(7,000원x340시간)

※ 연간 보수액은 **처우개선비를 제외한 보수금액**으로 입력합니다.
(시간당평균보수액은 625원이나 10만원 등 처우개선비를 입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일시적 성과금 : 연1~2회 받는 금액 (예 : 명절효도비, 인센티브 등)
- 계 : 연간보수액 + 일시적 성과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시간당 평균 보수액 : 연간보수액/연간근무시간 자동 계산

5. 기존종사자/신규입사자 입력내용 조회

2014년 7월 이후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작성 기준

○ 기존종사자
2013년 12월과 2014년 7월 **두 달 모두** 보수를 받아 **보수를 비교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 신규입사자
2014년 1월 이후 신규입사자 및 **기존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요양보호사
2013년 12월과 2014년 7월의 **보수를 비교할 수 없는** 요양보호사

- 예 1) 2014년 1월 이후 입사한 요양보호사
2) 2013년 12월엔 서비스 제공, 2014년 7월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요양보호사
또는 2013년 12월 서비스 미제공, 2014년 7월 서비스를 제공한 요양보호사
3) 방문요양은 2013년 12월과 2014년 7월 두 달 모두 근무하였지만, 방문목욕은 그러하지 않은 경우
: 방문요양(기존종사자), 방문목욕(신규입사자)
4) 2014년 7월 이후 서비스 직종 변경자(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5) 해당기관 퇴직 또는 근무형태 변경으로 2014년 7월 이후 재입사자 등

※ 2014년 7월 이전 청구를 위한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작성은 홈페이지-알림방-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3년3월 이후 급여비용 청구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전산입력방법(2013.3.25.)
- 2014년 7월 이전 급여비용 청구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작성방법 게시(2014.1.16.)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회원서비스
『20. 처우개선비』 선택 후
기존종사자 대장조회를 선택합니다.

5. 기존종사자/신규입사자 입력내용 조회

기준연월 2014년 07월
조회

(월급) 기존 종사자 보수비교표

기준연월	대상연월	직종	성명	주민번호	근무시작일	해당기관내 해당직종		보수형태	서비스종류	월보수				처우개선비	근무개월수	연간총보수액			월평균보수액	증감	감소사유	4대보험가입			
						여부	직종			기본급	법정수당	기타	계			연간보수액	일시적성급	계				건강	연금	산재	고용
201407	201312	11.요양보호사 1급			20110923	N		월급	방문요양	1,100,000	0	0	1,100,000	100,000	1	1,100,000	0	1,100,000	1,100,000	-	-	-	-	-	-
201407	201407	11.요양보호사 1급			20110923	N		월급	방문요양	1,150,000	0	0	1,150,000	100,000	6	6,900,000	0	6,900,000	1,150,000	증가		X	X	X	X

(시급) 기존 종사자 보수비교표

기준연월	대상연월	직종	성명	주민번호	근무시작일	해당기관내 해당직종		보수형태	서비스종류	시간급				처우개선비	연간근무시간	연간총보수액			시간당평균급여액	증감	감소사유	4대보험가입			
						여부	직종			시급	법정수당	기타	계			연간보수액	일시적성급	계				건강	연금	산재	고용
201407	201312	11.요양보호사 1급			20121101	Y	3.사회복지사	시급	방문요양	5,000	1,000	20,000	26,000	62,500	100	600,000	0	600,000	6,000	-	-	-	-	-	-
201407	201407	11.요양보호사 1급			20121101	N		시급	방문요양	6,000	0	0	6,000	62,500	1,000	6,000,000	0	6,000,000	6,000	증가	X	X	X	X	X

■ 기존종사자 보수비교표 조회

- 기준연월 : 2014년 7월 / 2014년 1월/ 2013년 3월로 조회 가능
- 기본적으로 현재 시점인 2014년 7월로 조회됩니다.
- 보수비교표는 월급과 시급이 같이 보여집니다.

5. 기존종사자/신규입사자 입력내용 조회

2014년 7월 이후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작성 기준

○ 기존종사자
2013년 12월과 2014년 7월 **두 달 모두** 보수를 받아 **보수를 비교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 신규입사자
2014년 1월 이후 신규입사자 및 **기존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요양보호사
2013년 12월과 2014년 7월의 **보수를 비교할 수 없는** 요양보호사

- 예 1) 2014년 1월 이후 입사한 요양보호사
2) 2013년 12월엔 서비스 제공, 2014년 7월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요양보호사
또는 2013년 12월 서비스 미제공, 2014년 7월 서비스를 제공한 요양보호사
3) 방문요양은 2013년 12월과 2014년 7월 두 달 모두 근무하였지만, 방문목욕은 그러하지 않은 경우
: 방문요양(기존종사자), 방문목욕(신규입사자)
4) 2014년 7월 이후 서비스 직종 변경자(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5) 해당기관 퇴직 또는 근무형태 변경으로 2014년 7월 이후 재입사자 등

※ 2014년 7월 이전 청구를 위한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작성은 홈페이지-알림방-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3년3월 이후 급여비용 청구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전산입력방법(2013.3.25.)
- 2014년 7월 이전 급여비용 청구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작성방법 게시(2014.1.16.)



기존종사자
대상입력/제출/
지급계획서 출력



기존종사자
대장조회



지급계획서



신규입사자
대상 입력



신규입사자
대장조회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회원서비스
『20. 처우개선비』 선택 후
신규입사자 대장조회를 선택합니다.

5. 기존종사자/신규입사자 입력내용 조회

급여제공연월 2014년 7월 이후 > 조회

(월급) 신규입사자 보수비교표

기준연월	대상연월	직종	성명	주민번호	근무시작일	해당기간 경직내용		보수형태	서비스종류	월급여				초우개선비	연간근무개월	연간총지급액			월평균지급액	4대보험가입			
						여부	직종			기본급	법정수당	기타	계			연간지급액	일시적성과급등	계		건강	연금	산재	고용
201401	201401	11.요양보호사 1급			20140303	N		2	단기보호	1,030,000	0	0	1,030,000	100,000	10	11,300,000	0	11,300,000	1,130,000	1	1	1	1
201401	201401	11.요양보호사 1급			20140303	N		2	주야간보호	1,030,000	0	0	1,030,000	100,000	10	11,300,000	0	11,300,000	1,130,000	1	1	1	1

(시급) 신규입사자 보수비교표

기준연월	대상연월	직종	성명	주민번호	근무시작일	해당기간 경직내용		보수형태	서비스종류	시간급				초우개선비	연간근무시간	연간총지급액			시간당평균급여액	4대보험가입			
						여부	직종			시급	법정수당	기타	계			연간지급액	일시적성과급등	계		건강	연금	산재	고용
201401	201401	11.요양보호사 1급			20140401	N		1	방문요양	7,000	0	0	7,000	100,000	1,440	10,080,000	0	10,080,000	7,000	1	1	1	1

인터넷 | 보호 모드: 해제 100%

■ 신규입사자 보수표 조회

- 급여제공연월 : 2014년 7월이후 / 2014년 1월~6월 / 2013년으로 조회 가능
- 기본적으로 현재 시점인 2014년 7월 이후로 조회됩니다.
- 보수표는 월급과 시급이 같이 보여집니다.

공단은 추후 아래 내용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① 보수 감소 사유의 정당성

②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심사결과 명세표의 서명 여부

③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실지급 여부

기타 궁금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공지사항>Q&A 게시물 참고

감사합니다.
Thank You ~

h·well

국민건강보험



요양운영실